

감리업자의 **평가기준**(제27조의3제2호 관련)

평가항목	세부 사항	배점범위	평가 방법
1. 과업내용 이해도	<p>과업수행 환경분석의 적정성</p> <p>예상 문제점 및 대책 수립의 적정성</p> <p>기술제안서 발표</p>	<p>15</p> <p>(5)</p> <p>(5)</p> <p>(5)</p>	<p>사업 추진 현황과 같은 사업의 특성 및 배경을 세밀히 파악하여 위 업무에 대한 이해도 표현</p> <p>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대책 제시</p> <p>책임감리원의 기술제안서 발표를 통한 업무내용에 대한 이해도 및 책임자 자질의 적정성 평가</p>
2. 과업수행 조직	<p>조직 구성의 적정성</p> <p>인원투입계획 의 적정성</p>	<p>15</p> <p>(5)</p> <p>(10)</p>	<p>조직구성원의 자질 및 업무 분장의 적정성 평가</p> <p>사업의 특성 및 주요 공사 종류를 고려한 배치인력의 적정성 평가</p>
3. 과업수행 세부 계획	<p>시공계획 및 설계도서의 검토사항</p> <p>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방안</p> <p>안전관리 방안</p> <p>공사관리 방안</p> <p>공정관리 방안</p>	<p>55</p> <p>(20)</p> <p>(10)</p> <p>(10)</p> <p>(10)</p> <p>(5)</p>	<p>해당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공계획 및 설계도서의 검토사항 제시</p> <p>세부적인 품질관리·품질보증 방안 제시(필요한 경우 주요 공사 종류별 체크리스트 제시)</p> <p>재해 예방 및 비상사태 발생 시 조속한 조치를 위한 안전관리 방안 제시</p> <p>공사의 품질 확보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공사 종류별 검사, 주요 기자재의 검수 및 관리 방안 수립</p> <p>주변공사(해당 용역과 관련된 공구 또는 공사 종류)와 연계하여 관리하는 방안 제시</p>

4. 과업수행 지원체계	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	15 (5)	발주자 및 시공자, 관련 용역회사,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(주요 공사 종류별 보고·협의체계) 구축 방안
	본사의 지원체계	(5)	상주(常住)하는 감리원에 대한 현장업무 지원 방안(전산장비, 상주하지 않는 감리원의 지원계획, 국내외 전문가 활용 등), 감리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계획 등
	기술자료 활용 및 정보관리 체계	(5)	법령정보 및 기술자료, 절차서, 전산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효율적 업무수행체계의 수준 평가

비 고

1.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자(이하 이 표에서 “발주자”라 한다)는 감리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·배점범위·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세부 평가기준(이하 이 표에서 “세부평가기준”이라 한다)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, 평가항목별 세부 사항에 대한 배점기준은 ±20% 범위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.
2. 발주자는 입찰희망자에게 세부평가기준과 기술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배부하거나 공람하도록 해야 하며, 평가 후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.
3. 발주자는 낙찰된 업체의 기술제안서를 감리용역계약문서로 정해야 하며, 입찰공고 시 이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.
4. 발주자는 입찰희망자가 기술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미리 확보하여 제시하여야 한다.
5. 발주자는 기술제안서의 작성분량과 작성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,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점의 범위에서 감점할 수 있다.